

2011.08.01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27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입법예고

□ 개요

- (개정 배경) 산지 및 소비지의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
- 도매시장 운영제도 및 매매방법 개선에 초점
 - 경매가격 급등/급락시 가격 변동폭 완화를 위해 가격안정명령제 도입
 - 정가·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유통의 효율화 추진
 -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
 - 시장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「시장도매인제(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)」 채택 허용
 -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 지방이양(지방이양확정사무)

□ 주요내용

○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

- 농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**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**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음.
-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, 기간,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.

○ 매매방법의 다양화

-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**정가 또는 수의매매**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함. 이는 산지 및 소비지의 여건변화와 출하자 및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○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 마련

-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 도입
 - ※ 대금정산조직 :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 설립된 조합, 회사

○ 중앙도매시장의 부류별 도매시장 존치 규정 완화

-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부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도매시장도 지방도매시장과 같이 개설자가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완화

○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

- 중앙도매시장의 경우,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던 것을 **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**하도록 함

○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

-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개설자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도)로 이양

○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관리 강화

- 도매시장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할 수 있도록 함

○ 기타 개정사항

- 쓰레기 유발부담금 폐지 : 출하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인해 쓰레기 유발부담금

징수의 필요성이 감소

- 경매사 임면신고 완화 : 기존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던 것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하도록 하고 개설자는 임면사항을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게시
- 산지유통인 등록, 도매시장법인 인수·합병의 승인, 중도매업의 허가,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- **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 규정을 도입하고, 법률 위반자 중 행정처분 대상자와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